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427

발의연월일: 2024. 7. 5.

발 의 자:김도읍・이헌승・구자근

신동욱 • 조지연 • 서지영

곽규택 · 김희정 · 김정재

권영세 · 장동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인신매매등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「형사소송법」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,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,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・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6조 및 제16조의2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409호) 및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 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1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8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의 준용) 인신매매 등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관하여는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특정강력범죄"는 "인신매매등범죄"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중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8조의4제1항을 준

용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변호사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7조제4항을 준용하는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혀 아 제16조(변호사 선임의 특례) ① 제16조(변호사 선임의 특례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 하여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하여는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7조제2 에 관한 특례법」 제8조의5제2 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 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 용한다. 이 경우 "피해자"는 "범죄피해자", "피해자등"은 "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 인"으로 본다. 제16조의2(「특정강력범죄의 처 <신 설> 벌에 관한 특례법 의 준용) 인신매매등범죄에 대한 형사절 차에 관하여는 「특정강력범죄 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8 조의3 및 제8조의4를 준용한 다. 이 경우 "특정강력범죄"는 "인신매매등범죄"로 본다.